

여러분에게 한마디

2016 한국여성재단 <성평등사회조성사업> 안내

2016 한국여성재단 <성평등사회조성사업> 개요

1. 지원사업 취지

한국여성재단 내 민간여성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사회 여성공익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사업추진기간

2016년 1월 ~ 2016년 11월

3. 지원 내용**1) 지원사업 구분**

구분	사업명	지원예산	지원대상
성평등 사회조성사업 1	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	최소 500만원, 최대 3천만원 사업비	비영리 여성단체
성평등 사회조성사업 2	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	최소 500만원, 최대 1천만원 사업비	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※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
성평등 사회조성사업 3	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 지원사업	최대 500만원 사업비 및 단체운영비 (인건비 포함)	비영리 신생여성단체

2) 공모일정

추진시기		내 용	비 고
2015년	9월 22일(화)	사업 공고	※ 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
	9월 22일(화) ~ 10월 26일(월)	접수	※ 10월 26일(월), 오후6시 우편 도착분까지
	10월 26일(월) ~ 12월 24일(목)	사업 심사 (사무처/서류/면접)	※ 1차 서류심사 통과 단체에 한하여 면접심사 진행
	12월 31일(목)	결과 발표	※ 여성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
2016년 *	1월 초	교부신청서 제출	※ 최종 선정 이후 진행
	1월 중순	실무자 워크숍	
	1월~11월	사업 진행	
	12월 중	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보고대회	

* 사업 신청 시, 교부신청서 제출, 실무자 워크숍,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.

3. 신청방법

- ① 접수기간 : 2015년 9월 22일(화) ~ 10월 26일(월)
 - ※ 10월 26일(월),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
 - ※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
- ② 접수방법 : 온라인(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)과 우편 모두 접수
 - ※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
- ③ 접수처 : (04001)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(서교동)
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

④ 제출서류

구분	세부내용
온라인 접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. <p>① 온라인신청서 작성</p>

	<p>② 이메일 서류 제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출서류 : 지원신청서(한글파일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첨부파일명 : 2016_성평등사회조성사업_단체명.hwp *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- 제출처 : 지원사업팀 김수현(free-hyune@hanmail.net)
우편 접수	<p>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</p> <p>② 지원신청서(소정양식) 4부</p> <p>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(주민번호 뒷자리 삭제) 사본 1부 *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<p>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(소정양식) 1부</p>

4. 문의

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

TEL.02-336-6385 / E-mail. free-hyune@hanmail.net

세부 공고 내용

[성평등사회조성사업 1]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

1. 사업명

-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

2. 신청사업내용

-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여성단체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사업
- * 단, ‘여성 및 아동 폭력(성폭력, 가정폭력 등)과 관련된 주제는 ‘성평등사회조성사업 2’ 사업을 통해 지원 신청**

성평등 실현,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

- : 새로운 Gender 이슈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
- : 일상의 성차별적 통념 개선을 위한 사업
- :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증진 사업
- :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 및 새로운 전환 모색을 위한 조직 사업
- : 그 외 성평등 실현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

성평등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

- : 성평등한 정책 실현을 위한 평가·분석 사업
- : 성평등한 정책을 새롭게 제안하는 사업

고용안정 및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

- : 여성의 일자리 확대 및 창출과 관련된 사업
- : 여성 비정규직 및 단시간 여성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
- : 여성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
- :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
- : 그 외 여성 고용 안정 및 확대,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

글로벌 역량강화향상을 위한 사업

- : 글로벌 여성의제 발굴, 확산 및 실천을 위한 사업

- : 국제적 네트워크 및 글로벌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
- : 그 외 국제적 영향력 및 단체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

- 그 외 성평등 사회조성과 성평등 문화 정착에 파급력 있는 사업(이슈 및 담론 생산, 새로운 운동 방식 발굴 등)

3. 지원대상

- 비영리 여성단체

*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.

단,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

* 신청제외 단체

- 시민사회단체
-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
-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
-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기관
- 대학 내 부설기관
-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
-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

4. 신청규모

- 신청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, 최대 3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

5. 신청사업 형태

구분		세부내용
사업 성격	신규사업	. 본 사업 추진기간(1년)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
	연속사업	. 2015년도 선정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연속지원 사업
사업 진행방식	단독사업	.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
	연대사업	.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. *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

6. 신청 시 유의사항

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

- 지원사업과 관련, 중앙정부.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
-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(정당, 친목단체 등)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
-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
-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
- 경상적경비(일반운영비, 여비, 사무실임대료, 사무실집기)가 주된 사업
-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(비품, 물품) 관련사업
-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, 후원사업
-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
-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

② 사업신청의 제한

- 2013년~2015년 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(자유&기획공모 포함)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
- 2014년~2015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3년 연속 신청 불가
-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,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
- 연대사업의 경우,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
-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,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(※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)
-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,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(센터, 상담소 등)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

③ 예산 편성

-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. 단,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
-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됨.
-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(비품구입비, 수용비 및 수수료 등)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% 범위 내에서, 인건비의 경우(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) 신청지원금의 20%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함.
단,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(인건비, 임대료, 경상운영비 등)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함.
-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.

[성평등사회조성사업 2]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

1. 사업명

-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

2. 신청사업내용

- 여성과 아동 폭력(성폭력, 가정폭력 등)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
- 사업 추진기간(1년)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

*** 단, 교육 관련 사업은 신청불가**

: 상담활동가 양성교육,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

3. 신청대상

-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
- ※ 미등록 여성단체(시설)도 신청 가능.

단, 미등록 단체(시설)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

***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**

※ 지원제외 단체

-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
-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
-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기관
- 대학 내 부설기관
-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
-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

4. 신청규모

- 지원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, 최대 1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

5. 신청사업 형태

구분		세부내용
사업 성격	신규사업	. 본 사업 추진기간(1년)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
	연속사업	. 2015년도 선정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연속지원 사업
사업 진행방식	단독사업	.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
	연대사업	.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. ※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

6. 신청 시 유의사항

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

- 지원사업과 관련,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
-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(정당, 친목단체 등)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
-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
-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
- 경상적경비(일반운영비, 여비, 사무실임대료, 사무실집기)가 주된 사업
-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(비품, 물품) 관련사업
-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, 후원사업 등
-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
-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

② 사업신청의 제한

-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,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
- 연대사업의 경우,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(※ 단, 시민사회단체는 제외)
-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,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(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)
-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,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(시설, 쉼터, 센터, 상담소 등)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

③ 예산 편성

-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. 단,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

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

-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됨.
-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(비품구입비, 수용비 및 수수료 등)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% 범위 내에서, 인건비의 경우(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) 신청지원금의 20%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함.
단,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(인건비, 임대료, 경상운영비 등)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함.
-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.

[성평등사회조성사업 3]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 지원사업

1. 사업명

- 신생여성단체 지원사업

2. 신청사업내용

-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
- 사업 추진기간(1년)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

신생여성단체 목적사업비 지원

- :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자유주제 사업
- : 여성주의에 기초한 창의적인 사업
- : 단체 기반 조성을 위한 단체 고유목적 사업

신생여성단체 운영비 지원

- : 단체 운영비 지원
- : 단체 인건비 지원

3. 신청대상

- 비영리 신생여성단체

* 신생여성단체란?

- 단체의 설립목적 및 정관상 주요사업에 성평등 사회 실현을 포함하고 있는 여성단체
- 설립한지 3년 이내, 1명 이상의 상근자를 둔 여성단체

* 미등록 여성단체(시설)도 신청 가능

* 지원제외 단체

- 시민사회단체
-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
-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
-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기관
- 대학 내 부설기관
-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
-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

4. 신청규모

- 단체 당 최대 500만원 이하 지원

5. 신청사업 형태

구분	세부내용
신규사업	. 본 사업 추진기간(1년)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
연속사업	. 2015년도 선정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연속지원 사업

6. 신청 시 유의사항

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

- 지원사업과 관련,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
-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(정당, 친목단체 등)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
-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

② 사업신청의 제한

-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,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
-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,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(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)
-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,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(센터, 상담소 등)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

③ 예산 편성

-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. 단,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
-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됨.
- 단체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의 경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(인건비, 임대료, 경상운영비 등)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함.
-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.



제2회 여성평등 '여성의 힘'

2016 한국여성재단 <성평등사회조성사업> 예산편성기준

예산과목

관	항	목	세목 例	내역 ¹⁾
○ ○ ○ 사 업 비	사 업 비		<p>【직접비】 중 인건비성 경비】</p> <p>심사비, 강사비, 발제비, 토론판, 자문비, 거마비, 원고료, 기획비, 회의 참석비, 통역료, 번역료, 프로그램 진행자 인건비, 영상 및 자료 제작시 용역비, 연출료, 코디네이터, 멘토링비 경비 외</p>	직접비
			<p>【행사 및 프로그램비】</p> <p>토론회, 사업설명회, 캠페인, 보고회, 간담회, 소모임, 워크샵, 회의비, 각종 행사비 외</p>	
			<p>【홍보비】</p> <p>홍보물(포스터, 전단지, 홍보책자, 판촉물, 기념품 등) 제작비, 자료집현·현수막·보고서·사업영상CD제작비 외</p>	
			<p>【사업내용에 따라】</p> <p>직업훈련(교육훈련)비, 의료지원비, 글로벌연수비, 연구비, 교통비, 사례 지원비, 자활지원비, 상금, 시설비, 공사비 외</p>	
			<p>【기타 사업비】</p> <p>심그 밖의 직접비로 위의 세목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업비</p>	
	인 건 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담당자 인건비 중 일부 지원 - 사업수행에 필요한 단순인건비(일용직) <p>(※ ‘성평등사회조성사업’은 해당하지 않음)</p>	간접비
			<p>【공공요금】</p> <p>우편료, 전신전화료, 전기료, 상하수도료, 가스료 등</p>	
	관 리 운 영 비		<p>【수용비 및 수수료】</p> <p>사무용품비, 도서구입비, 수수료, 발송비, 통행료, 주차료, 복사비, 제본비, 소액수리비, 포장비, 쓰레기봉투구입비 등</p>	간접비
			<p>【업무추진비】</p> <p>사업관련 미팅 비용, 사업담당자 출장교통비 등</p>	
			<p>【기타 운영비】</p> <p>그 밖의 운영경비로 위의 세목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</p>	

1) ()사업비 / (목)사업비 : 프로그램 비용, 강사비, 캠페인 비용, 자료 제작비, 토론판 비용 등 직접사업비
 (항)관리운영비 / (목)인건비 : 지원사업 주담당자 인건비는 재원의 특성과 정해진 일정비율에 따라 편성 가능
 (항)관리운영비 / (목)운영비 : 그 외 간접경비인 운영비는 재원의 특성과 정해진 일정비율에 따라 편성 가능

□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사업담당자 인건비 및 운영비 편성의 허용 범위

- 사업담당자 인건비 : 신청사업비의 20% 한도내에서 편성 가능.
단, 정부 혹은 타 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
- 운영비 : 신청사업비의 10% 한도 내에서 편성 가능.
단, 단체운영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단체는 인건비 및 운영비 편성할 수 없음

□ 예산 편성 기준표²⁾

예산과목	기준	사용한도	비고
강 사 비	- 대학 조교수 이상,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- 기업, 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, 중역 - 판·검사, 변호사, 회계사 등 전문직 -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 한 4~5급 공무원 - 기타 위의 자격에 준하여 단체(시설)의 장이 인정하는 자	- 1시간 180,000원 - 초과 매시간당 100,000원	* 수행단체 (시설)의 내부직원 지급불가 단, 예외적으로 단체(시설)의 임원에 한하여 일회 5만원 한도, 총 교육 횟수의 30% 이내 지급 가능
	-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, - 4~5급 공무원 - 특별강사 - 기타 위의 자격에 준하여 단체(시설) 장이 인정하는 자	- 1시간 130,000원 - 초과 매시간당 50,000원	
	- 전임이외의 외래시간 강사 - 외국어, 전산 등의 학원 강사 - 기타 단체(시설) 장이 인정하는 자	- 1시간 100,000원 - 초과 매시간당 40,000원	* 강사비는 원고료가 포함된 금액임
	- 보조강사(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)	- 1시간 50,000원 - 초과 매시간당 30,000원	*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자율
	- 2시간 이하	- 5인 이하 27.5만원 - 6~10인 40만원 - 11인 이상 55만원	적으로 강사비 책정 가능(자율
	- 2시간 초과	- 5인 이하 35만원 - 6~10인 50만원 - 11인 이상 70만원	적으로 힘들 경우 강사비 등급 확인)

2)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지원 사업 예산 편성 기준표를 참조하여 재구성한 것임

3) 음악이나 무용 등 다수인이 참여

예산과목	기준	사용한도	비고
자문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시간 이하 - 2시간 초과 - e-mail 자문(유선포함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회 70,000원 - 1회 100,000원 - 20,000원(1회당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자문기록필 히 비치 * 시외 경우교 통비 실비 지급 가능 * 1일 최고 200,000 원 상한 * 수행 단체(시설)의 내부 직원 지급불가
	<p>※ 공통사항 : 자문내용 기본 form A4 용지 80 columns x 20 lines 글씨크기 13 point 문단간격 160%, 상하 여백 15, 좌우 여백25</p>		
심사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면접심사 - 서류심사 - 현장방문(사업진행 확인과 슈퍼비전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일 100,000원 - 사업별 회당 200,000원 - 회당 200,000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심사기록필 히 비치 * 시외 경우 교 통비 실비 지급 가능
회의 참석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시간 이하 - 3시간 초과 시(1일 1회에 한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70,000원 - 100,000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회의록 필 히 비치 * 수행 단체(시설)의 내부 직원 지급불가
원고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A4용지 1매 기준 80columns×20lines, 글씨크기 13point 문단간격 160%, 상하여백15, 좌우여백25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5,000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강사비와중복 지출 불가 * 자료집, 보고서 등의 제작에 필 요한 원고를 외부에 청탁한 경 우에 해당
번역·통역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통역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한국외대 통역번역센터(www.hufscit.com) 요율표 기준 ※ 매해 발표되는 기준 참조, 시행시점 가장 최근 자료 이용 ※ 국제회의 등 전문통역이 아닌 가이드 형식의 통역은 해당금액의 1/2이하 적용 - 번역비(결과물 기준) A4용지 1매당 20,000 이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번역분야 및 난이도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※ 한국외대 통역번역센터(www.hufscit.com) 요율표 참조 - 번역내용 기본 form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A4 용지 80 columns x 20 lines 글씨크기 13 point 문단간격 160%, 상하 여백 15, 좌우 여백25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이주여성 중 가능 인력 활용

	기준	사용한도	비고
워크샵	- 1인 기준	50,000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1박2일 기준임 * 숙박비, 식비, 진행비 등 포함 * 프로그램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정산 가능
인쇄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부 인쇄기준요금 ※ 인쇄업체의 원가계산서(단가산출표)첨부 ※ 홍보물 및 책자제작의 경우 배포계획서를 마련하여 비용 최소화 		
홍보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생활정보지 : 1회 100,000 이하 - 현수막 : 장당 100,000만원 이하 원칙(장소에 따라 조정 가능) - 우편료 등 : 실비 정산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현수막의 경우 지원금 10만 원 이내로 만 책정 가능
직업 훈련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노동부의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이하 		
단순 인건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일 8시간 기준 60,000원(중식비 포함) ※ 1시간당 단순인건비 6,500원(최저임금액 시간당 6,030원)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근로기준법, 소득세법 준수
교통비	- 시내여비	실비	
	교통비 (KTX일반, 고속버스, 전세버스 등)	실비	
	- 시외 여비	8,000원	
	식비(1인 1식)	실비 (상한액 50,000원)	
식사비	- 1인 기준	8,000원	
다과비	- 1인 기준	4,000원	

* 무통장입금 이제 시에 들어가는 수수료는 각 예산 항목으로 포함해서 계산

예) 강사비 200,000원 + 수수료 500원 = 강사비 200,500원